

2026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2차 공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 초광역권 선도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1.0억원(국비 1.0억원)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총 1개 세부사업, 2개 지원 프로그램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초광역권 선도기업 대상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전북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프로그램) 총 2개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단가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초광역권 선도기업	기술지원	R&D기획, 제품고급화,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석 등	100백만원 이내	지정 기업 1개사	협약일 ~11월
	사업화 지원	디자인·브랜드 개선, 마케팅, 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분석 보고서 등			

※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세부 프로그램별 내용 확인 必, 지원 단가는 지원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공급기관(업) 포함)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요건검토) → 선정평가(대면평가) → 결과통보
- (공급기업 관련) 사업신청서 작성 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 플랫폼 내 혁신바우처 Pool에서 공급기업을 선택하여 참고용 전적 제출(선택한 공급기업 전적서 1부와 비교전적서 1부 이상 필수 제출)

◆ **공급기업 지정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플랫폼 – 바우처 사용 클릭 – 분야별 리스트 확인

링크	https://www.mssmiv.com/portal/menupan/MenupanList?sch_flg_year=2026
----	---

- 선택한 공급기업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 진행 후 확정 예정
-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기업이 추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단, 공급 서비스의 대체 불가능성 등 특이사항으로 인해 혁신바우처 Pool 외의 공급기업을 선택하는 경우, 공급기업(관) 신청서(붙임 5 양식)와 제반서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25년 표준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동일하게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 진행 예정
- 수혜기업 최종 선정 후 공급기업 추천 및 확정이 원칙

○ **(선정평가 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
지원내용 타당성 (35)	○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25
	○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5)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15
	○ 고용·매출 증대 가능성 및 지역 내 파급효과	10

※ 평가 항목은 세부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우대가점) 선정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1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3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TP 확인	1

③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 예시 : A 지원사업과 B 지원사업의 각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세부사업별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최소 10% 이상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사업비 산출 시 주의사항 ※

- 프로그램별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현금 부담 원칙,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기업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프로그램명	지원금	기업 자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총 사업비	비고
시제품 제작	10,000천원	1,000천원	11,000천원	VAT 2,200천원은 기업 부담
마케팅	10,000천원	1,000천원	11,000천원	
합 계			22,000천원	

※ 프로그램별 지원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시, 기업은 총 사업비 및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22,000천원+2,200천원=24,200천원)에 대해서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지급) 기업지원금 지급은 최종평가물 평가 후 지급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2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3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4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구분	신청제외 대상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6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7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엔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전자접수시스템 외 제출 불가(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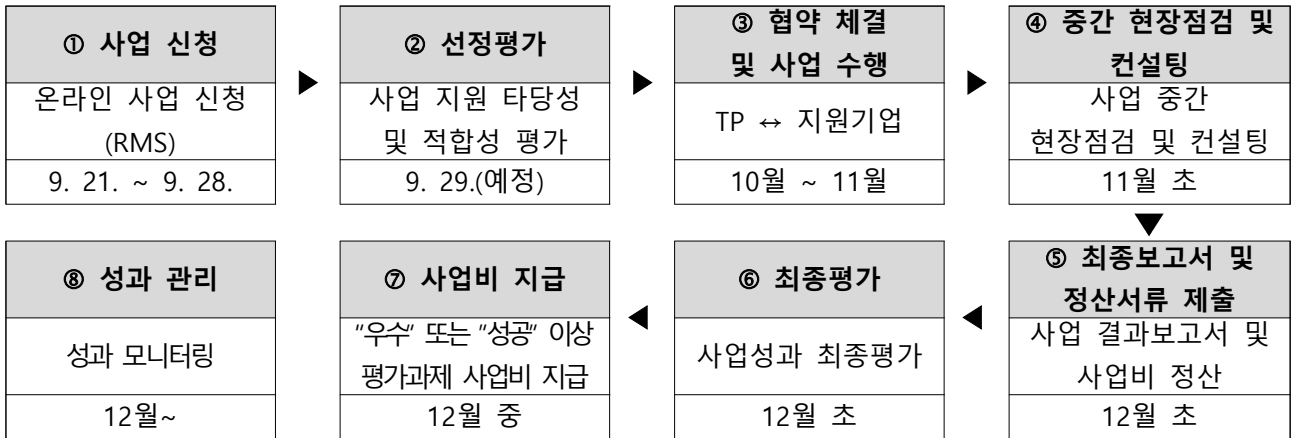
○ 지원사업 중 홍보물 제작 관련 지원(마케팅, 디자인) 결과물에 아래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본 홍보물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2026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일자 : 2026. 00. 00.

4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추진 상황에 따라 절차와 방법/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신청접수) 2026. 9. 21.(월) ~ 2026. 9. 28.(월), 18:00까지
 - ※ 9월 28일 18:00 내에 최종 제출 완료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속(해당 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 마감일 접속 증가에 따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요망
 - (제출서류) 첨부서식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必

6 관련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단	송지연	063-219-2124	jysong@jbtp.or.kr

- 시스템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공급기업 등록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RMS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협업R&D 과제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지원규모)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정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부가세 제외)
- (지원대상)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정 1개사(제한경쟁)
※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복수지원 불가
- (지원기간) 협약일 ~ '26. 11. 30.(월)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분야의 바우처 형식 자율적 프로그램 선택 및 지원

☐ **상세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목표
기술협력형	R&D기획,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석 등	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2건 이내
거래협력형	시제품제작/제품고급화, 시장분석 보고서, 마케팅,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브랜드개선 등		2건 이내

※ 세부 프로그램 참고

지원구분	지원내용
기술협력형	①R&D기획 ②선행기술조사 ③특허분석 ④기술교류 ⑤수요기술 발굴 및 확보 ⑥연구 인프라(장비, 인력 등) 확보지원 등
거래협력형	①사업화 전략 및 민간투자 컨설팅 ②상품기획 ③시제품제작/제품고급화 ④인증 및 특허지원 ⑤시장분석 보고서 ⑥마케팅전략 수립 ⑦전시회 참가지원 ⑧디자인 개선 등

※ 총 사업비 = 지원금액 + 기업부담금(지원금액의 10%), (단, VAT 제외)

※ 2개 프로그램 이상 패키지 구성(기술협력형+거래협력형 혼합 가능)

☐ **참고사항(지원제외)**

- ① '24년에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초광역 선도기업이 아닌 경우
- ② 신청내용이 중앙정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내용일 경우
- ③ 신청내용이 지원기간 내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 ④ 기타 "사업지침"에 위반되거나 통합 공고문의 지원제외 대상에 적용되는 경우

☐ **제출서류** *모든 서류 필수 제출(9, 13번 서류만 해당 시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서식 1, 2	한글파일로 제출(**.hwp) * 직인 페이지는 한글파일에 삽입
2	세부 견적서 1부 및 비교 견적서 1부(산출내역 필수 포함)	사업비 산출내역과 일치
3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 4
4	청렴서약서	서식 5
5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서식 6
6	민간부담금(현금) 출자 약약서	서식 7
7	자가진단표	서식 8
8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업종코드 확인서	붙임 3, 4 참조
9	공급기업(관) 신청서	해당 시, 붙임 5
10	사업자등록증	-
11	'23~'25년(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13	우대가점 증빙 및 기타 기업 역량 관련 서류	해당 시

☐ **유의사항**

- 기업부담금(현금)은 상기 조건에 맞춰 산출되어야 함.
예) 시제품제작 지원 총사업비 55백만원의 경우, **지원금 50백만원(90%)+기업부담금 5백만원(10%)**
- 사출(금형) 공정개선 지원의 경우 신청기업 제조 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만 인정
- 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함 ※ 인건비, 출장비, 식대 등은 사용불가
- 모든 지원 내용은 지원기간 내에 수행 완료 후 최종결과물 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공 또는 양호” 이상의 평가결과가 나와야 최종지원금 지급 예정
- 모든 지원내용은 지원기간 내에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만 인정